



전라북도교육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[알림] 신학기 온라인 개학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불법 편법 운영 등 학원(교습소) 지도 감독 철저

1. 관련 : 평생학습정책과-3557(2020.4.8.)

2.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초.중.고.특수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통해 학생의 안전 보호 및 학습공백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, 온라인 개학은 학생들이 밀집되는 공간에서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있으며,

3. 또한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(~4.19)에 따라 집단발병 위험성이 높은 학원 등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(기존 9개 시.도) 하는 등 행정명령을 강화하였습니다.

4.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, 온라인 개학(4.9)을 앞두고 일부 학원 등에서는 학원을 학교의 정규수업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하고, 온라인 수업을 학원에서 들으며 관리를 해준다'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*하고 있습니다.

*언론보도 : '학원 가서 학교 원격수업 듣는 아이들..'연합뉴스(2020.4.9.), 교육부 '학원에서 학교 원격수업 듣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'(뉴시스, 2020.4.9.)

5. 이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온라인 개학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, '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'. 또는 '거짓.과대광고' 등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므로,

6.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원 및 교습소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.감독과 동 내용을 안내하여 도내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, (사)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서는 학원에 대하여 동 내용을 전파하여 학원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아울러, 교육지원청에서는 개학 추가연기 등으로 유보되었던 「신학기 학원 특별점검」(관련 공문 미래인재과-3198, 2020. 2. 20)을 실시하여 주시고, 동 점검 시 불법.편법 운영, 거짓.과대광고 등에 대한 중점 점검 및 '코로나19 방역 점검'또한 병행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점검 결과는 각각 별도 제출). 끝.

본 문서는 [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대책본부]와 협의된 사항임